

2015년 현장점검 결과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대토론회

은행권 금융개혁 과제 주요 사업화 · 상품화 방안

2016. 2. 4.(목)



목 차

1. 온라인 · 모바일 실명확인 도입
2.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
 - ① 브랜드 사용료 수취 허용
 - ② 은행의 캐릭터 저작권 라이선싱 허용
 - ③ 문화행사 관련 부수업무(티켓 판매 등) 범위 확대
 - ④ Wechatpay의 가맹점 관리업무 등 대행 허용
3. 오픈 플랫폼 서비스 관련 포괄적 동의 등 허용
4. 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 지역제한 완화

1. 온라인 · 모바일 실명확인 도입

현황 및 문제점

- 고객은 직접 금융회사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좌개설이 가능
- **국민이 금융서비스 이용시 창구에 방문** 해야 하는 불편 발생
- IT인프라 및 핀테크기술을 접목한 **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에 어려움** 존재

개선 사항

- **금융위원회는 『금융실명법』, 『전자금융거래법』 유권해석을 통해 복수의 방식을 통한 온라인·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**(15.12월)

- [이중확인 : 필수] ① 신분증 사본 제출, ② 영상통화,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, ④ 기존계좌 활용,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(바이오인증 등) 중 2가지 의무 적용
- [다중확인 : 권고]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(휴대폰인증 등),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~⑦ 중 추가확인 권고

1. 온라인 · 모바일 실명확인 도입

상품화
사업화

- 신한은행을 기점으로 '15.12월부터 온라인 · 모바일 실명확인 방식 시행 ('16년 상반기 중 대다수 은행이 동 방식을 도입 예정)
- 외화송금, 공인인증서 발급, 거래한도 상향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로 확대하여 영업점 방문 없이 손쉽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

1 <신분증 투입>

본인 확인을 위하여 실명증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
오른쪽 상단에 신분증 투입구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넣어 주십시오.
주변이온 카메라가 작동합니다

2 <손바닥정맥지도 인증¹ 또는 <영상통화>

바이오인증을 준비 중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

1. 손바닥 정맥도를 스캔하십시오.
2. 손바닥 정맥도를 스캔하십시오.
3. 손바닥 정맥도를 스캔하십시오.

또는

영상통화

3 <ARS 추가인증>

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
추가 본인확인을 진행하겠습니다.
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거래는 추가본인확인 후에 처리됩니다.

ARS, OTP카드, 신분증 재확인, 카드 비밀번호

4 <OTP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>

카드가 정상 발급 되었습니다.
카드를 수령하여 주십시오.



1. 온라인 · 모바일 실명확인 도입

기대효과

- **고객이 온라인 · 모바일 방식으로 계좌개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**
 - **금융회사간 경쟁과 혁신이 확산되어 대국민 서비스 혁신 가속화 기대**
 - **고객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으로 향후 핀테크 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 기대**

2.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

현황 및 문제점

-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의 경우 법령에 열거된 업무 이외에는 금융위원회 신고를 통해 영위 가능
- 은행의 겸영업무가 열거식으로 규제됨에 따라 새로운 금융업무 영역의 영업·서비스개발 유인을 저해

개선 사항

-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이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를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, 은행의 여유 인적·물적 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('15.8월)

기대 효과

- SNS·문화행사와의 연계 마케팅을 통해 은행 이미지 제고
- 은행이 인적·물적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고객 기반 및 수수료 수익 확대

2.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- ① 브랜드 사용료 수취 허용

현황 및 문제점

- 은행이 소유한 브랜드를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
- **브랜드 사용료 수취업무가 부수업무로 신고된 바 없어 브랜드 사용료 미수취**
- **브랜드 소유주체(지주사, 은행, 중앙회 등)에 따라 브랜드 사용료 수취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**



개선 사항

- **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하고, 수리 내용을 공고('16.1월)**
- 다른 은행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당 브랜드 사용료 수취업무의 영위가 가능

기대효과

- 은행의 브랜드 사용료 수취 허용으로,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추징 및 독점규제법 위반 소지 해소
- 저금리·저성장으로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절실한 **은행의 수익성 제고에도 기여**

2.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- ② 캐릭터 저작권 라이선싱 허용

현황 및 문제점

- 고객 인지도 및 친밀도 증진 등을 위해 은행의 캐릭터를 마케팅 및 저작권 라이선싱에 활용할 필요
- 캐릭터 저작권 라이선싱 업무는 부수업무로 신고된 바가 없어 은행은 저작권 라이선싱 업무 수행 불가

개선 사항

-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캐릭터 저작권 라이선싱 관련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('15.10월)

상품화 사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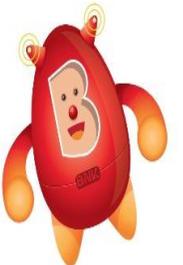
- 은행 캐릭터 상품(또는 콘텐츠) 제작 및 유통업체 대상 캐릭터 사용권 대여 등 가능
- [예시] 은행 캐릭터 유료 이모티콘(사용기간 : 무제한)을 카카오톡에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(35%)을 캐릭터 저작권료로 징수



기대 효과

- 은행 브랜드에 대한 홍보 효과로 고객 인지도와 친밀도 증대 및 캐릭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라이선싱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 기대

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



2.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- ③ 문화행사 관련 부수업무(티켓 판매 등) 범위 확대

현황 및 문제점

- 은행은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대행 업무를 영위 가능(은행법시행령 18조1항2호)
- 은행 영업점에서만 티켓 판매가 가능하여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고객 불편 초래

개선 사항

-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이 문화포털 사이트,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해 티켓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('15.9월)

상품화 사업화

-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입장권 판매가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티켓 판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
- 온라인·모바일 등을 통한 티켓 판매도 가능

기대 효과

- 은행이 기존의 인적·물적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고객기반 및 수수료 수익 확대
- 다양한 문화 행사 관련 입장권 판매를 통해 문화 분야 소비를 촉진
- 각종 문화산업과의 연계 마케팅을 통해 해당 은행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



2.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- ④ wechatpay의 가맹점 관리업무 등 대행업무 허용

현황 및 문제점

- 하나은행은 ‘하나카드의 카드판매대행(위·수탁계약)’을 근거로 수탁자로서 **하나카드가 제휴한 Wechatpay 결제 가맹점의 관리 및 모집 업무를 대행 중**
- 동 업무가 하나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‘하나카드의 카드 판매대행’ 겸영업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등 불명확



개선 사항

-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하나은행의 Wechatpay 판매대행(가맹점 모집 및 관리) 업무를 은행의 **부수업무로 허용**(‘15.11월)



상품화 사업화

-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**Wechatpay 판매대행 업무의 근거 마련**
- Wechatpay 판매대행 업무의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행이 가능

기대 효과

- **중국 관광객(요우커)**이 많이 사용하는 **모바일 결제앱**을 통해 국내에서 쉽게 물품 구매 및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중국관광객을 통한 **외화유입 및 해당 가맹점의 매출증대가 예상**
- 지급결제수단을 보유한 다양한 **외국계 비금융회사와의 협약**을 통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**업무범위의 확대 및 수익성 제고 기대**

3. 오픈 플랫폼 서비스 관련 포괄적 동의 등 허용

현황 및 문제점

- **은행권**은 핀테크기업이 앱(Application)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**‘은행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’** 구축을 추진
- 은행이 보유중인 **고객의 거래정보**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**매번 금융실명법에** 규정된 **서면상 동의**에 대한 이슈 발생

개선 사항

- **금융위원회**는 **‘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’** 서비스와 관련하여 **포괄적 동의를 허용** 하고, **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동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(‘15.12월)**

상품화 사업화

- 핀테크 기업이 **은행계좌 잔고조회 기능이** 포함된 **‘가계부 앱’** 을 만들어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**고객의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**

기대 효과

- **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동의가 인정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**
- **포괄동의를 인정됨에 따라 고객들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핀테크 서비스 이용 가능**



4. 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 지역제한 완화

현황 및 문제점

-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에 위치한 은행 영업점에 한해서만 대출상품 판매 위탁이 가능
- 은행과 계열관계에 있는 저축은행들은 계열 은행이 폭넓은 지방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계 대출 지역을 제한함에 따라 지방 거주 서민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함

개선 사항

-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「상호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 모범규준」이 자율운영사항으로 변경 (금융위원회, 「현장점검반 6월중[10~12주차] 건의사항 회신결과」[15.8월])

기대 효과

-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방 거주 서민들의 저축은행 증금리 대출수요 충족에 기여
- 금융업권간 업무 시너지효과를 증진시키고 업권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
감사합니다.

무사귀환다'